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17 발의연월일: 2023. 8. 31.

발의자:윤미향·송옥주·이수진비

김의겸 • 윤재갑 • 윤준병

신정훈 · 정성호 · 이장섭

강은미 • 양정숙 • 강민정

이성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화재·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 향후 오염수로 인한 해양의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회재 난으로 규정하여 대비·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방사능오염사고"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u>환경오염사</u>	<u>환경오염사고·방</u>
<u>고</u>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	사능오염사고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	
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	
한 피해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